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6. 10 선고 2019가단614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20. 1. 8

판 결선고 2020. 6. 10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피고는 C과 사이의 2011. 7. 26.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,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75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O 원고는 2002. 4. 8. 화성시 D 임야 661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.)를 매수하여 동생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한국토지공사가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2006. 12. 28. C에게 보상금 76,896,333원을 지급하였고, C은 2007. 1. 20. 경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 12,000,000원만을 지급하였다.

O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.)에 관하여 2007. 1. 29. 자신 명의로 2007. 1. 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, 2011. 7. 26. 피고 명의로 같은 날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.)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752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O 원고는 2011. 9. 2.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5500)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2. 8. 22. '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및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 명의를 C 앞으로 해놓았고, C은 보상금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'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64,934,141원과 그 중 64,896,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.

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O 원고는 2012. 10. 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4795)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3. 12. 5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(이하 '종전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

다.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(수원지방법원 2014나2270)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. 8. 1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종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 2, 3, 을1, 2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C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.

무자력인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.

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판단

원고의 주장은,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.

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이미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하므로(대법원 1976. 12. 14.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),원고의 주장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역시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정영훈

별지